

「지적재조사 측량규정」(국토교통부고시 제2020-902호, 2020.12.4.)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22년 8월 3일

국토교통부장관

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일부개정고시

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조제2호 부터 제9호 까지를 각각 제1호 부터 제8호 까지로 한다.

제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지적측량수행자는”을 “책임수행기관은”으로 한다.

5. 항공(「드론 활용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 포함)사진측량

제5조제1항 중 “지적측량수행자는 사업지역”을 “책임수행기관은 지적재조사 지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지적측량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”를 “책임수행기관 및 지적재조사대행자는 제1항의 측량 수행계획에 따라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지적기준점좌표는 세계측지계좌표로 산출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입회시켜”를 “참관시켜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소관청은 시·군·구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을 별표 3과 다르게 제작·설치할 수 있다.

제14조제1항 전단 중 “지적측량수행자는”을 “책임수행기관은”으로 한다.

제19조 전단 중 “지적측량수행자”를 “책임수행기관 및 지적재조사대행자”로 한다.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중 “지적측량수행자”를 “수행인력”으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계점표지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고시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경계점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적재조사 경계점으로 본다.

(3쪽 중 제1쪽)

지적재조사측량 수행계획서

구분	내용		비고
사업명			
사업근거			
계약기간		계약금액	
업무량			
지구특성			
수행인력			수행인력 변경 시 문서 제출
기초측량계획	지적위성측량	토털스테이션측량	세부일정 별지
세부측량계획	지적위성측량	토털스테이션측량	세부일정 별지
기타협의사항			사전협의

세부일정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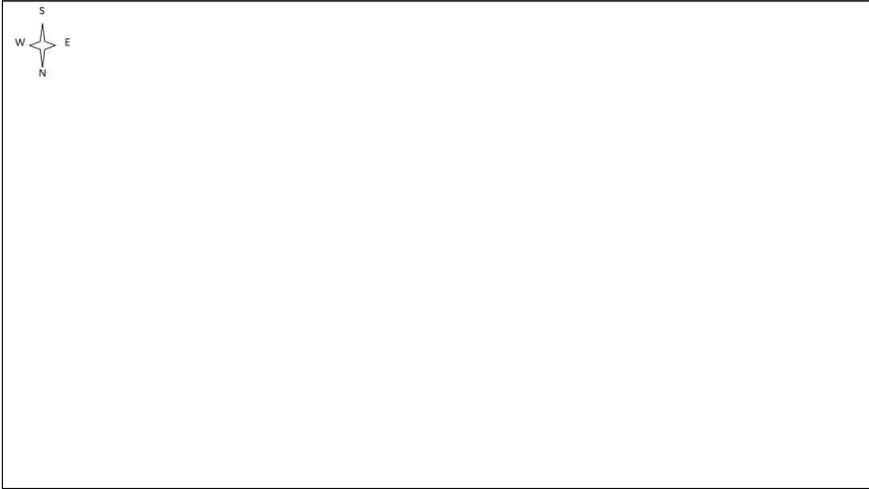
종목	작업별	업무량 (점,필)	작업기간	소요일	비고
준비	수행계획서 작성 및 준비				
	사전 협의 및 계획서 작성				
기초측량	자료조사				
	현장준비 및 답사				
	선점				
	매설				
	관측				
	계산				
	기지점 부합 여부확인				
	성과작성				
세부측량	점검				
	자료조사				
	계획·준비				
	지구의 내·외 경계측량				
	임시경계점표지설치				
	현황측량				
	면적측정 및 계산				
	확정예정조서(신구대조도) 작성				
성과작성	경계재설정 및 수정 확정예정조서작성(제출)				
	측량검사(20일)				
	확정경계점표지설치(확인)				
	토지현황조사서				
합계	지상경계점등록부				
	성과도서류 작성				
	점검				
	납품				
	준공검사				
	합계				
안전조치 계획					

※ 상기 일정은 특수여건 및 일기, 위원회의 운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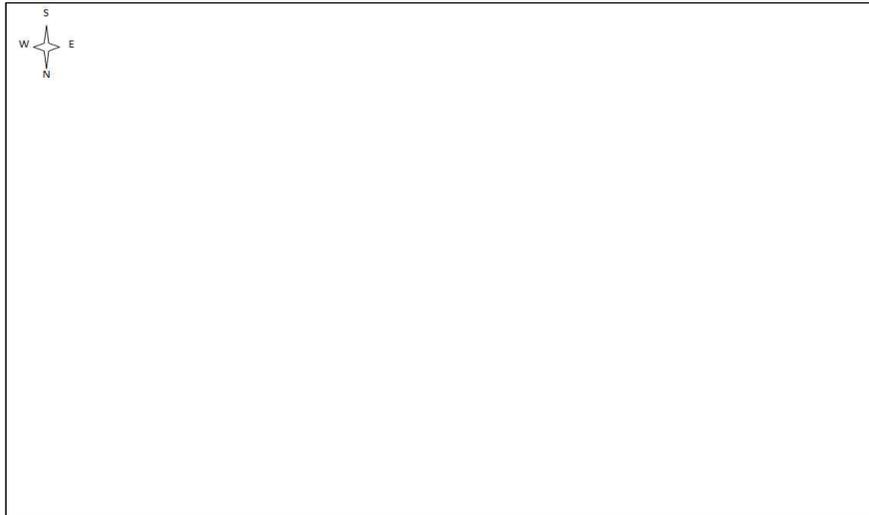
○○○지적재조사지구 측량계획도

토지소재지	(시·군·구)	(읍·면)	(동·리)	번지 일원
-------	---------	-------	-------	-------

지적재조사지구 도면(행정구역)



지적재조사지구 위치(위성영상)



년 월 일

지 적 재 조 사 측 량 부

(시·군·구) (읍·면) (동·리)
지 구

측량일자 : 년 월 일

측 량 자 : 지적○○ (서명 또는 인)

검사일자 : 년 월 일

검 사 자 : 지적○○ (서명 또는 인)

【 목 차 】

- 1. 면적 및 지번 집계표
- 2. 지적확정예정토지 지번별조서
- 3. 좌표면적 및 경계점간거리계산부
- 4. 경계(보조)점 관측 및 좌표계산부 (필요시 제출)
- 5. 지적재조사측량 종합도
- 6. 지적재조사측량 종전도
- 7. 지적재조사측량 신·구 대조도

면적 집계표(총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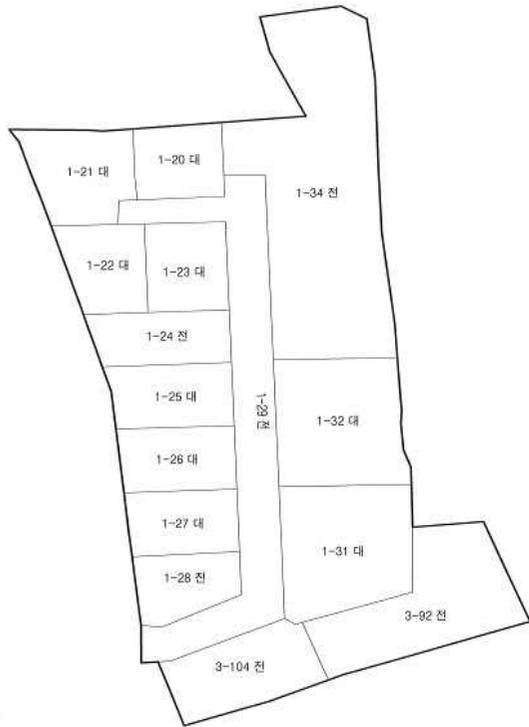
○○시·군·구 ○○지구 지적재조사사업				
순번	구 분	필수(필)	면적(㎡)	비 고
1	종전			
2	확정예정			
합계				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중 전 도

00시·군·구 00읍·면·동 00지구 지적재조사사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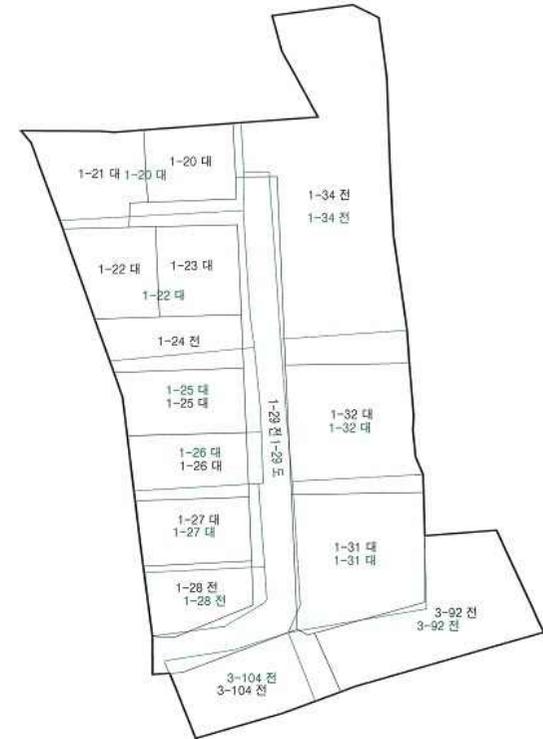


2022. 0. 0.
 측량자의 기관명 또는 업체명
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

841mm×1189m[백상지(80g/m²) 또는 중질지(80g/m²)]

신·구 대 조 도

00시·군·구 00읍·면·동 00지구 지적재조사사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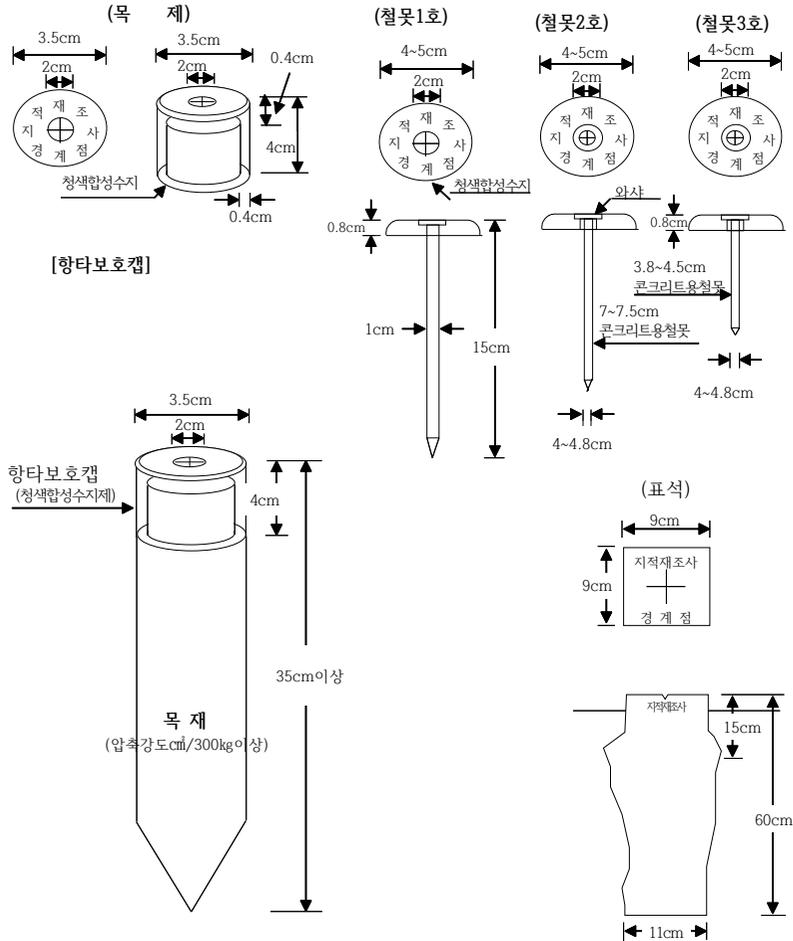
범 례

	확정지적선
	중전지적선

2022. 0. 0.
 측량자의 기관명 또는 업체명
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

841mm×1189m[백상지(80g/m²) 또는 중질지(80g/m²)]

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



비고

1. 목재는 비포장지역에 설치한다.
2. 철못1호는 아스팔트 포장지역에 설치한다.
3. 철못2호는 콘크리트 포장지역에 설치한다.
4. 철못3호는 콘크리트 구조물·담장·벽에 설치한다.
5. 표석은 소유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설치한다.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
1. “지적측량수행자”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·조사 등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.	<삭 제>
2. ~ 9. (생 략)	1. ~ 8. (현행 제2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)
제4조(측량방법) ①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제5조에 따라 지적기준점 및 경계점을 측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.	제4조(측량방법) ① ----- ----- -----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5. 항공(「드론 활용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을 포함한다)사진측량
② 지적측량수행자 는 제1항에 따라 측량하는 경우 사전에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·특별자치시장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175조에 따른 대도시로서 구를 둔 시의 시장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지적소관청과 협의하여야 한다.	② 책임수행기관은 ----- ----- -----
제5조(측량계획의 수립) ① 지적측	제5조(측량계획의 수립) ① 책임수

량수행자는 사업지역에 대하여 토지소재, 면적, 측량방법, 작업여건, 측량기간, 인원, 장비 등을 조사·검토하여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지적재조사측량 수행계획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지적측량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여야 한다. 다만, 시·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1. 측량계획 수립
2. 지적기준점측량
3. 지적재조사지구의 내·외 경계측량
4. 임시경계점표지 설치
5. 경계점의 측정
6. 측량성과의 계산 및 점검
7. 측량성과의 작성
8. 면적의 산정

제7조(지적기준점 측량) ① (생략)

② 지적기준점좌표는 세계측지계좌표로 산출한다. 다만, 지적재조사지구의 내·외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측지계좌표를 산출할 수 있다.

③ ~ ⑤ (생략)

행기관은 지적재조사지구-----

② 책임수행기관 및 지적재조사대행자는 제1항의 측량수행계획에 따라 -----

<삭제>

<삭제>

<삭제>

<삭제>

<삭제>

<삭제>

<삭제>

<삭제>

제7조(지적기준점 측량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지적기준점좌표는 세계측지계좌표로 산출한다.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경계점표지의 설치) ① (생략)

② 제11조에 따라 설치한 임시경계점의 위치와 법 제18조에 의해 최종 확정된 경계점의 위치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을 일회시켜 새로운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<신설>

제14조(측량성과 작성 및 제출) ① 지적측량수행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측량성과물을 작성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한다. 이 경우 측량파일(GDB 또는 SDB, DXF, SHP, DAT)의 레이어코드 및 속성코드는 별표 5에 따른다.

② (생략)

제19조(안전조치)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재조사측량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2조(경계점표지의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참관시켜 -----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소관청은 시·군·구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을 별표 3과 다르게 제작·설치할 수 있다.

제14조(측량성과 작성 및 제출) ① 책임수행기관은 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안전조치) 책임수행기관 및 지적재조사대행자--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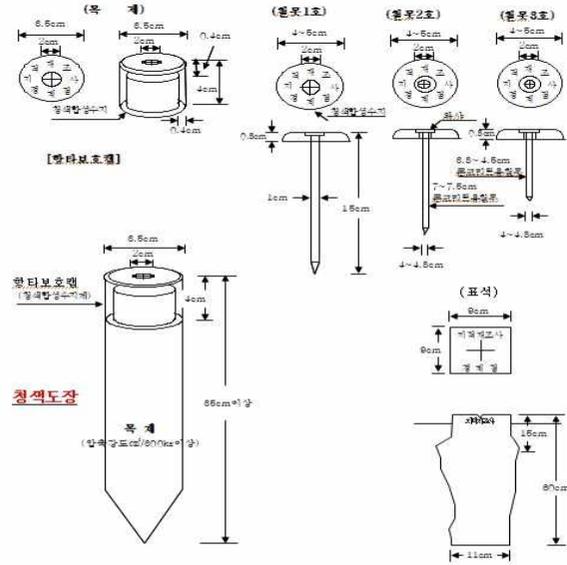
현 행			개 정		
■ 지적재조사사업규정 [별지 제1호] (3쪽 중 제1쪽) 지적재조사측량 수행계획서			■ 지적재조사사업규정 [별지 제1호] (3쪽 중 제1쪽) 지적재조사측량 수행계획서		
구분	내용		구분	내용	
사업명			사업명		
사업근거			사업근거		
계약기간	계약금액		계약기간	계약금액	
업무량			업무량		
지구특성			지구특성		
수행인력			수행인력	수행인력 변경 시 문서 제출	
기초측량계획	지적위상측량	트립스태이션측량	기초측량계획	지적위상측량	트립스태이션측량
세부측량계획	지적위상측량	트립스태이션측량	세부측량계획	지적위상측량	트립스태이션측량
기타협의사항			기타협의사항		
*210mm x 297mm [복합기(80g/㎡) 또는 등질기(80g/㎡)]			*210mm x 297mm [복합기(80g/㎡) 또는 등질기(80g/㎡)]		

현 행 (별지3호 9쪽 중 제7쪽)	개 정
총 합 도 00시·군·구 00읍·면·동 00지구 지적재조사사업	
2022. 0. 0. 지적측량수행자 기관명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	
*841mm x 1198mm [복합기(80g/㎡) 또는 등질기(80g/㎡)]	

현행

■ 지적재산사측량규정 (별표 3)

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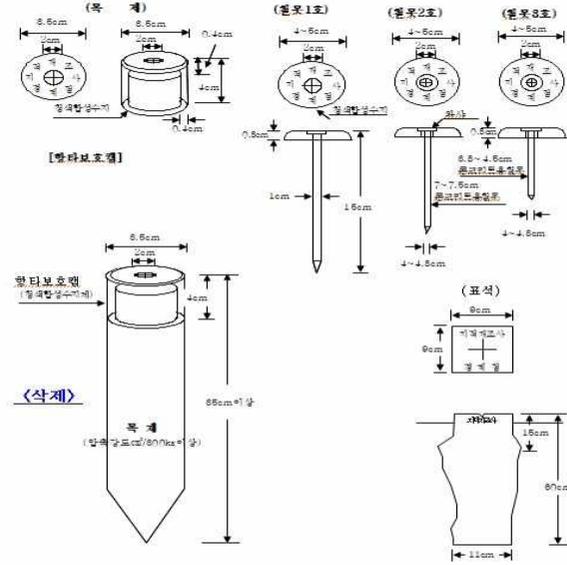


- 비고
1. 목재는 비포장지역에 설치한다.
 2. 철못1호는 아스팔트 포장지역에 설치한다.
 3. 철못2호는 콘크리트 포장지역에 설치한다.
 4. 철못3호는 콘크리트 구조물·담장·벽에 설치한다.
 5. 표석은 소유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설치한다.

개정

■ 지적재산사측량규정 (별표 3)

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



- 비고
1. 목재는 비포장지역에 설치한다.
 2. 철못1호는 아스팔트 포장지역에 설치한다.
 3. 철못2호는 콘크리트 포장지역에 설치한다.
 4. 철못3호는 콘크리트 구조물·담장·벽에 설치한다.
 5. 표석은 소유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설치한다.